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54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차량간의 충돌사고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므로(신호위반), 과실도표 201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100% 적용 함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하였고,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청구인 40%, 피청구인 60% 과실적용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으로 판단됨 피청구차량 조수석 충면부 파손 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신호위반)에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직진 주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고(신호위반),
- 만약,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38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은 인정함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노면지시 위반 및 무리한 진행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임 따라서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목격차량의 동영상(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선행 청 구차량의 모습)
- 목격차량의 동영상(적색신호에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진 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신호위반)

주요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청구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청구차량 녹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피청구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 동영상상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우측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측면부 파손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피청구차량 신호위반),
-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으므로 기본과실 0% : 100%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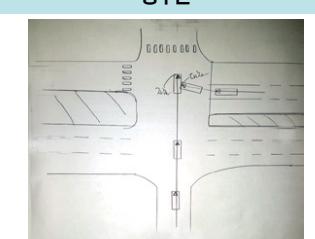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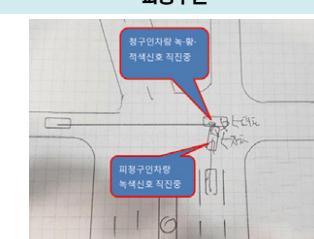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A녹색에 직진 진입 적색에 충돌)(수정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녹-적)직진	녹색 직진	참고기준 202 (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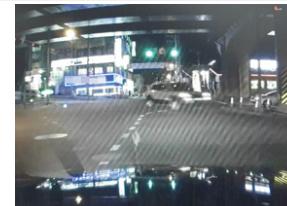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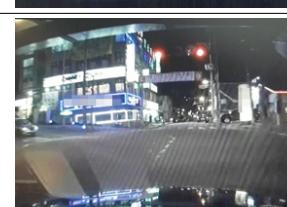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016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2(가)	 <p>(가)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 피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청구차량 또한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음을 감안하여,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로 결정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진신호에 출발하는 모습 • 직진신호에 진행 중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차량과 녹색신호에 후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 변경 후 급출발

결정 근거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됨
- 피청구차량은 직진신호에 진행하였으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동영상에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진입 후 녹색-황색-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청 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교차로 내 상황을 살펴 청구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어야 함
- 피청구차량이 녹색신호로 변경된 후 곧바로 출발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도 (가) 기본과실 30% : 70% 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피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5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만일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더라도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은 동일함 즉,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점 및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여부
-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차량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충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는지 의문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203도표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충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102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5 : 6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장소는 동일 폭의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7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므로, 과실비율은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가 타당함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table border="1"> <tr> <td>지방법원</td><td>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td></tr> <tr> <td>사건</td><td>[Redacted]</td></tr> <tr> <td>피고인</td><td>1. 주거 2. 등록기관</td></tr> <tr> <td>증명자료</td><td>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에, 피고인 [Redacted] 백신 200,000원상인판에 저지 한다.</td></tr> </table>	지방법원	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	사건	[Redacted]	피고인	1. 주거 2. 등록기관	증명자료	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에, 피고인 [Redacted] 백신 200,000원상인판에 저지 한다.				
지방법원	정본 입니다 2019. 1. 8. [QR code]												
사건	[Redacted]												
피고인	1. 주거 2. 등록기관												
증명자료	피고인 [Redacted] 백신 700,000원상인판에, 피고인 [Redacted] 백신 200,000원상인판에 저지 한다.												
	<table border="1"> <tr> <td>발생일시</td><td>2018.11.01 19:45</td></tr> <tr> <td>발생장소</td><td>[Redacted]</td></tr> <tr> <td>사고유형</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사고원인</td><td>신호 또는 지시 위반</td></tr> <tr> <td>피해내용</td><td>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음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td></tr> <tr> <td>사고내용</td><td></td></tr> </table>	발생일시	2018.11.01 19:4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음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사고내용	
발생일시	2018.11.01 19:45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내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피해내용	외상 : 사망 0, 부상 1 명, 물괴 : [Redacted] #1차량 난호위반으로 #2차량 충돌하여 운전자 음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사고내용													

• 현장사진(피청구차량 방향)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

• 청구차량이 진행한 좌측도로의 폭이 넓은 상태임

•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를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에 처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1차량(가해차량)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다를 경우(대소로 구분 가능 도로)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법원의 약식명령서상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있고,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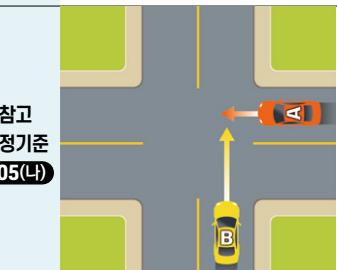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된 점, 청구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한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 우측도로에서 직진	↑ 좌측도로에서 직진	참고기준 205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50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5(나)	 <p>(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통행차량이지만,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차량을 후미추돌 함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므로, 피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우선권이 있음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5 동시진입 사고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및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파손됨

결정 이유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각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였고, 청구차량도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41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인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인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동시에 교차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6(가)	<p>(가)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가)의 경우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명백히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양보 운전을 해야 함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일시 정지 위반, 과속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지만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 본 사고는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대로)
• 동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모습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소로)
• 양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
-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대소로가 구분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볼 수 있고, 청구차량이 대로 직진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이 소로 직진차량임
- 동영상에 의하면 양차량 선진입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워 동시진입 중 사고로 판단함
- 청구차량 조수석 앞휀다, 피청구차량 운전석 전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진입한 도로가 대로에 해당되고,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16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청구차량은 우측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양보 운전해야 하고,
- 양 차량의 동시 진입사고로 보아야 함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6의 (가) 기본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 동영상상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후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함
- 청구차량의 과실 80% :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 앞범퍼 파손
- 피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파손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모습(피청구차량 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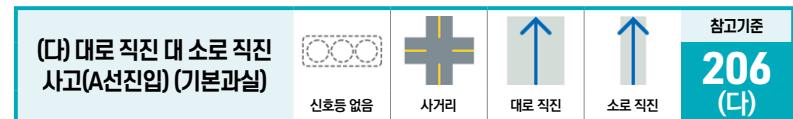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대로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및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 청구차량의 앞범퍼 부위,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 대로에서 직진으로, 피청구차량 소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 통상 대로 진행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 진행차량도 교차로에서는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동영상에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상당히 진행한 시점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가 청구차량 전면부 피청구차량 측면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949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다가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차 사고)
 -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심의의 주차차량을 충격함(2차 사고)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차량은 편도 2차로의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편도 1차로의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후미추돌하였음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피양불가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 100%과실이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없으며, •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 따라서, 본 사고는 동일 폭의 도로에서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좌측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 60% : 우측차량인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 통행하였는지 여부
-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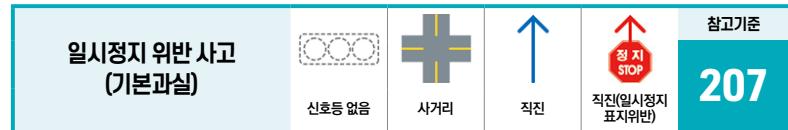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사고장소는 동영상상 신호기는 없으나 대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동영상 및 청구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 동영상에 의하면 2차 사고는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소로에서 진행한 피청구차량이 후진입하였으므로, 동시진입한 사고의 기본과실 70%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로 판단함
- 동영상상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1차 사고만 적용하기로 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323 결정비율 A(청구) : B(파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필생한 사고로, 파정구자당이 주행한 노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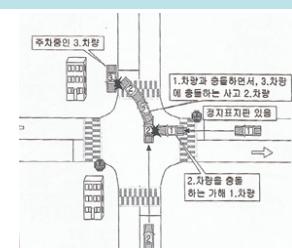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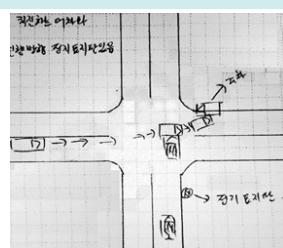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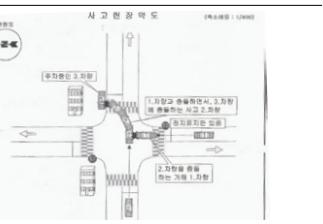
- 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였고,
- 피청구차량은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구차량의 축면을 충격하고,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재충격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정지표시 위반과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10% : 피청구차량의 과실 90%를 주장함

피청구인



- 피청구자량은 일시정지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 청구자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피청구자량이 우측자량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자량의 과실 50% : 피청구자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피정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시가 없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장 사고원인은 피정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임
- 사고현장 악도상 피정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정지표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피첨구처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처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위상 피첨구처량이 가해처량으로 판단됨(교차로 통행반칙의 반)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첨구차량이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가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5조 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피첨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청구차량 또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20% ● 피첨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853 |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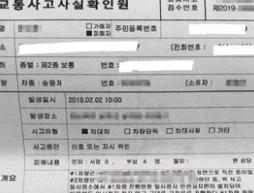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청구차량은 천천히 표지를 위반하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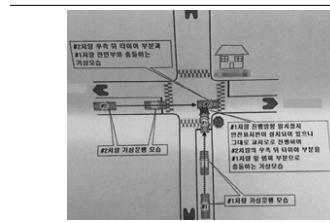
참고 인정기준 207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자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충돌후미를 충돌한 사고임(청구차량 선진입) •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고,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음 •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차량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해자로 판단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60% 인정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기재됨
- 사고현장 약도 내용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됨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 표지판이 설치됨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천천히 표지판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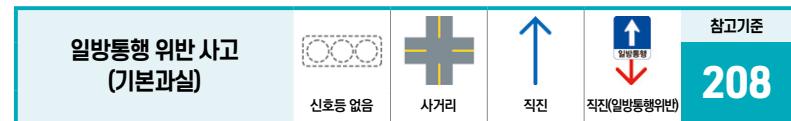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청구차량의 축면부 파손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 천천히 표지가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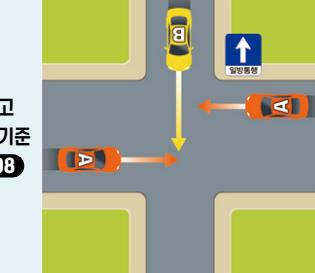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충돌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있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있는 점,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불명확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대소로 구분이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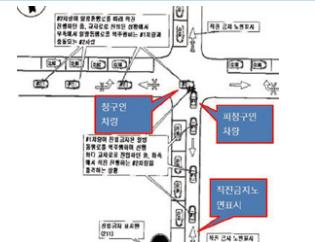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444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8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정상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진입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역주행 진입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의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의 일방통행 역주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차량이 과속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로 결정함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우측도로에서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은 피청구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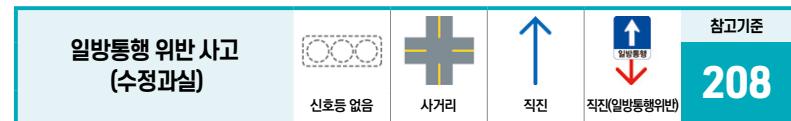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 청구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주의의무가 있고, 피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차량의 과실 일부 인정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175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축면을 충격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08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정상 주행하여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피청구차량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였음 청구차량은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차량의 우회전을 확인 후 진행하였는데, 청구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음 후진시 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5% : 피청구차량의 과실 15%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사고 발생 전 노면의 표시에 따라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청구차량이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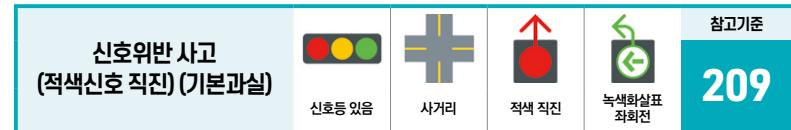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고,
- 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대형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 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축면을 충격한 사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후진경로를 살피지 않고, 후방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 중임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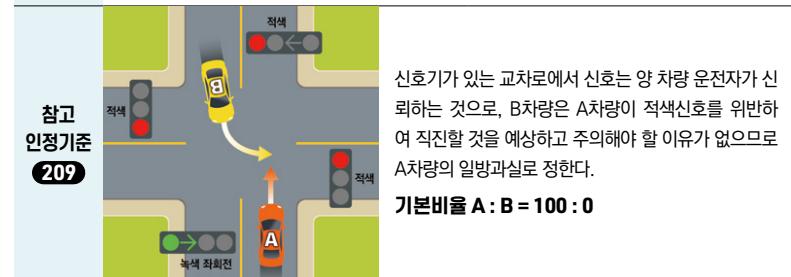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46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화살표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차량 또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p>• 사고현장(신호등 설치됨) • 청구차량 조수석 측면부 파손</p>	<p>•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함(신호위반) • 피청구차량 전면부 파손</p>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인정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좌회전 신호에 따른 좌회전으로 추정)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7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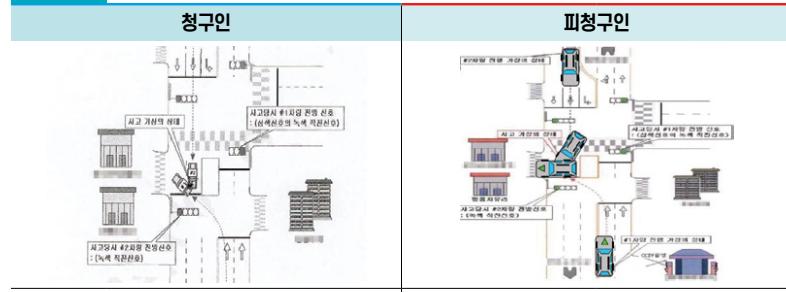
• 전기기 있는 교사로에서 성구사용이 족적전호에 적신아던 봉 윗은편 노도에서 족적전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첨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기본비율 A:B=0:10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 청구인차량은 20km이상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로변경하였고,
-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50% : 피청구 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동차사고 과질비율분쟁 짐의 사례 | 제1장 사동차와 사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첨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첨구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 상황(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녹색 진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과속 또는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실을 과실비율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자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속도이나 진로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7457

결정비율

A(피칭)

1) : B(청구)

= 10 : 9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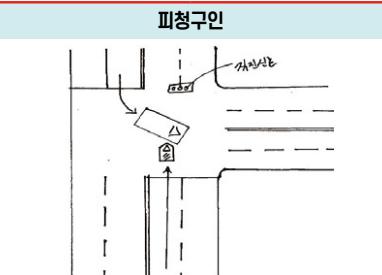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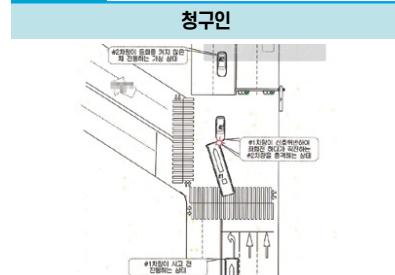
-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발생 당시 피청구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였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기본비율 A:B=0:100

주장 내용



- 청구처량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함
 - 피청구처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만연히 운행하였음
 - 따라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처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청구처량은 신호위반 및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였음
 - 사고현장은 가로등으로 인하여 밝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처량은 피청구처량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음
 - 신호위반한 청구처량의 100%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피첨구차량이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모습(동영상)
 - 피첨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처량은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처량은 전조등을 미점등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처량의 전조등 미점등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피청구차량 또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운행한 과실이 인정됨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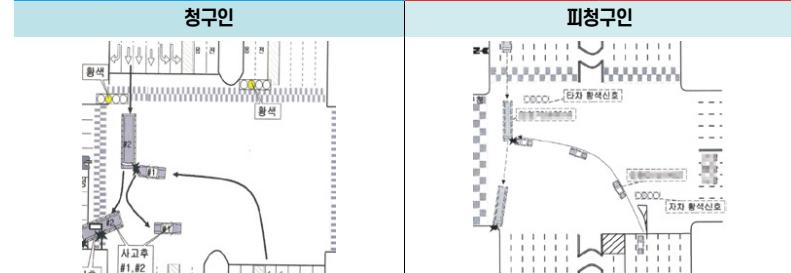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361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쯤 황색신호로 바뀌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음
- 피청구차량은 예측하여 출발하였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한 사고임
- 양 차량의 동일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 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 2016-036161 등
운전면허	운전면허 번호 : [redacted] (주) [redacted]
사고장소	사고장소 : [redacted] 경상남도 [redacted]
사고유형	사고유형 : ■ 교차로 ■ 차량방향 ■ 차량사고 ■ 기타
사고경위	사고경위 : [redacted]
사고내용	사고내용 : [redacted]
사고다른	사고다른 : [redacted]

-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사고발생 직전의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후 신호 변경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양 차량의 신호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후로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되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나, 청구차량이 직진 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05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2	<p>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 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하였음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 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차량 또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89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2	<p>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였음(양 차량의 신호위반)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차량의 앞부분이 충돌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기좌회전 중이었음 따라서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40%,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주행도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 구간으로 좌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함 비보호좌회전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진행방향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음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파손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충돌상황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고 장소의 특성상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나, 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진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14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한 이후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차량 정체로 좌회전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 통과하던 중 피청구차량의 후미 추돌하였음 따라서 교차로에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모습(우측 피청구 차량)
- 녹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의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 녹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유무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변경 즉시 출발하여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꼬리물기식으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3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고자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2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한 이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음 청구차량은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과 과속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사진 피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시도하는 상황 2차선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상황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주의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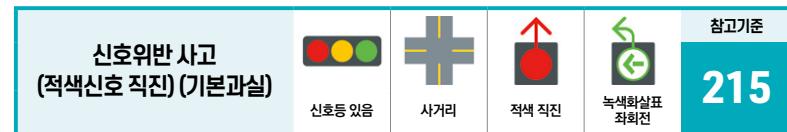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이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진입 경위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가 전면부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증대함
-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을 할 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좌회전을 더욱 주의 깊게 해야 하고, 청구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다소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직진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804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우회전 후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 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였음</p> <p>• 신호에 따라 진행한 청구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청구차량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아님</p> <p>• 청구차량의 정상 좌회전을 인정함</p> <p>•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청구차량보다 피청구차량이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상대차량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01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에는 양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판단된 사고임 청구차량은 운전석 측후면을 충격 당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됨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고본사고 접수번호 제 000-000000000000
성 명	<input type="checkbox"/> 고속도로 신호등 위반
주 소	<input type="checkbox"/> 도로 위반
운전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운전 중
사고장소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화빌딩: 6층)
사고일자	2018.03.16 22:15
운행방법	교차로 통과 (좌회전)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회전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회전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증명	증명: 사항: ○, 부상: ○ 명, 물의: ○ 원
증명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사고개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를 조사한 결과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운전자는 차량운전자의 운전상태는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한 기재 없음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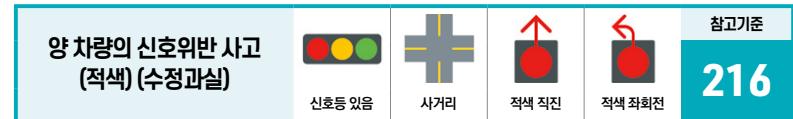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양 차량 모두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직좌신호로 바뀐 이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
- 청구차량의 휠휠다부분이 접촉된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내용만 기재된 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게 되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신호체계의 시간상 차이는 있으나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었음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12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이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신호위반)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음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음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됨 청구차량의 전면부 파손 사진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파손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후 신호체계 변경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임
- 이후 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신호가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이후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좌신호로 변경되며 전 적색신호에 조기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임
-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뀐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양 차량의 동일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사고 발생 당시 직좌신호(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40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8	<p>도표 217에 비해 B차량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좌회전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조사결과 양 차량 신호위반 확정되었음 따라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건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함(5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 사고현장 및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체계 및 양 차량의 진행 경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기재됨
-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황색신호가 상당 시간동안 유지되었고, 청구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이전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동일한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인정되는 점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의 초기에 좌회전 진입하였고,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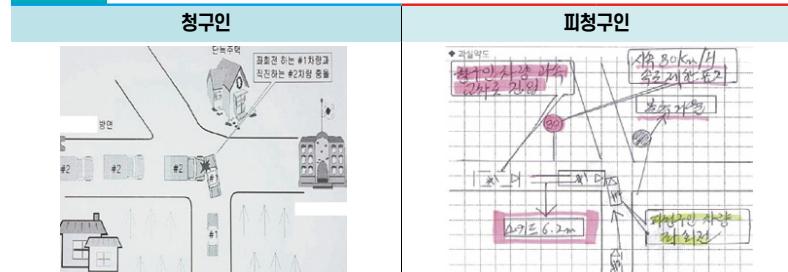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953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경찰기록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
- 피청구차량은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피청구 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 청구차량은 30km/h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였음
- 청구차량이 약 7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전면부)
-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전면부)

-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직진차량 대 오른쪽 좌회전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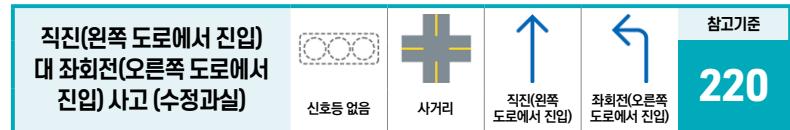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고,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임
- 동영상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속도위반은 확인하기 어렵고, 양 차량 모두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 주의하지 않은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점,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0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과실 40%, 좌회전차량의 과실 60%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고도 위 도표 220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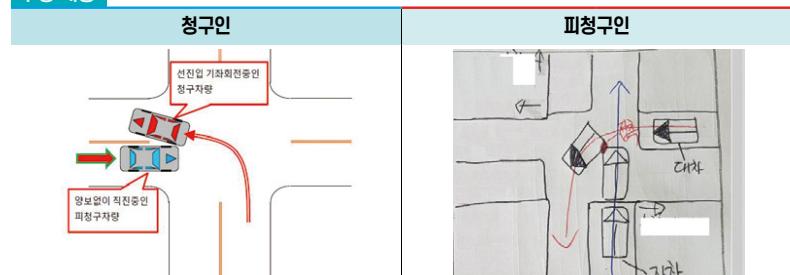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9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을 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양보 없이 직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급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고, 청구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을 피할 수 상황이었음
-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1)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2)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임
- 사고발생 당시 사진 및 파손부위 등으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사고 후 정차 위치 및 충격부위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0에 따라 왼쪽 직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좌회전차량인 청구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및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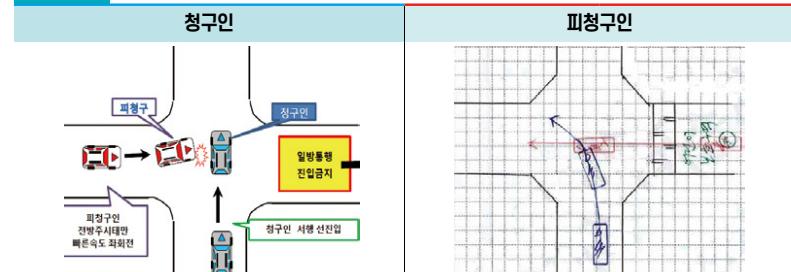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207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좌회전하였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과실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피청구차량이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모습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과 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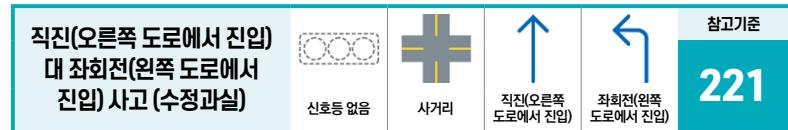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 및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양 차량의 서행 또는 과속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양 차량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였고,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도표 221은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판단한 도표 220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93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선진입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원쪽 도로에서 급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90% 이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기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전면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한 이후 서행하여 선좌회전하는 모습
-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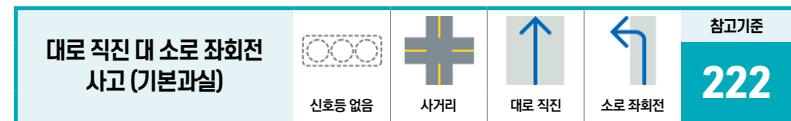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였고, 이후 서행으로 청구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1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30%,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하고 있는데, 본 사고는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이후 서행상태에서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던 점을 수정요소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923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p>•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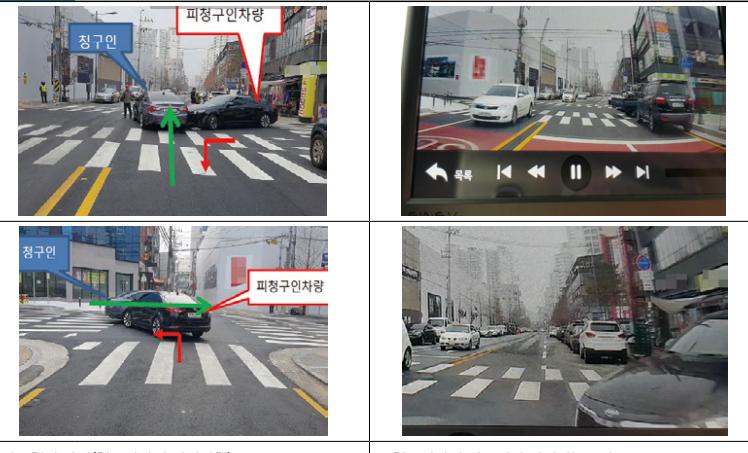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도표 222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정상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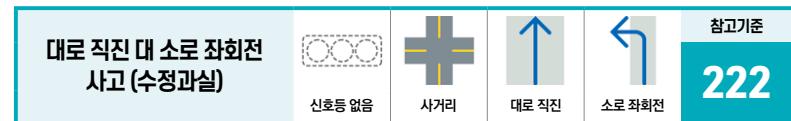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도로인 점, 직진차량 대 좌회전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 점, 양 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2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에게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측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407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본과실률 20:8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좌측후미부위를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면서 피청구차량을 치고 지나갔음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대로이고,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소로임)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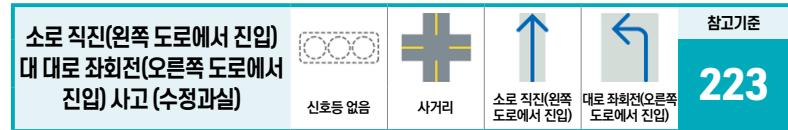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좌회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 차량인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었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22의 기본과실 비율에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

2019-043504

결정비율

$$A(\text{청구}) : B(\text{피청구}) = 60 : 40$$

사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첨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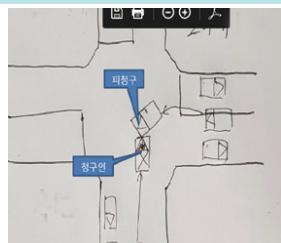


대로 좌회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제4항이 경합되고 있고, 소로 직진과 좌회전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B = 50:50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23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다고 판단됨
 - 청구차량은 감속 없이 직진을 하였음
 -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기좌회전을 하였음
 -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 제1장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입증 자료



교통사고신고		신고번호	신고일자	경찰서 지정일자
별	신고유형	[경찰서] 신고내용 [경찰서] 경찰서		
속	신고내용	(경찰서)		
인증서	증명서	증명서	증명서	증명서
고지문	고지문	고지문	고지문	고지문
발행일자	2016.04.16 17:00			
발행장소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시기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	신고유형	신고내용	신고내용
신고내용	[경찰서] 신고내용			
표현유형	일반	일반	일반	일반
기타	[경찰서] 기타			



- 사고현장 사진(왼쪽 소로에서 칙진하던 청구처량)
 - 사고현장 사진(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지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첨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CCTV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원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23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청구차량의 과실 50%,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 50%를 기본과실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59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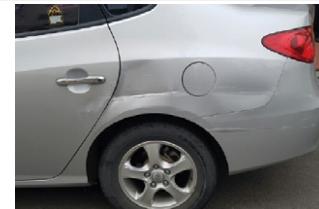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일부 선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으나 우측차량이고, 선진 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후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였고, 좌측차량임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대로에서 통행하는 피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후면)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4는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직진차량의 과실 45 : 좌회전 차량의 과실 55로 정하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위 도표 224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하여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일부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170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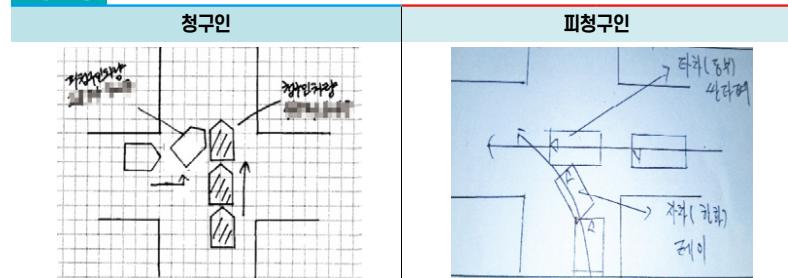
사고내용 • 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쪽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의무가 있고, 동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만, 직진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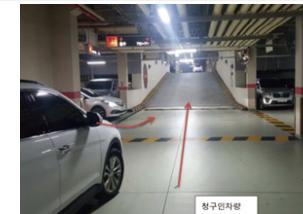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20 : 80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벽면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이 우선멈춤 표지를 위반한 과실을 가산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직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서행 및 선진입 좌회전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등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 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 피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우선멈춤 표지 있음)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 및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서행상태에서 일부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지하주차장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의 주행 통로에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5는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양 차량의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20% :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에서는 위 도표 225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 좌회전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612 |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양보 표지가 있는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본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이나, 도표 226과 동일한 유형의 삼거리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도표 240과 양 차량의 진행방향이 다른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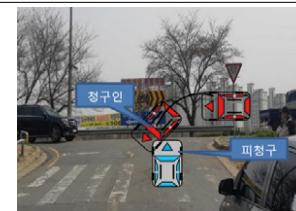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양보 표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정지 표지에 따라 정지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양보를 위해 정지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접수 번호 제2019-027612호
접수일자	2019.03.28 13:20
발행장소	경기도 부천시
사고국적	■ 차대차 □ 차량단독 □ 차대사망 □ 기타
사고현장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청구동 1111번지
사고내용	정지: A차량, 부상: 0 명, 불상: 경상상
사고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충돌로 인해 차량이 충돌한 경우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있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진행방향 표시)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하여 직진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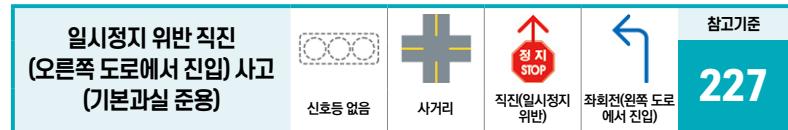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양보 표지가 있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이 양보 또는 일시정지 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진입도로에 양보 표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6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직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7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 3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로 도표 226과 차이가 있으나, 양보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 방향과 피청구차량의 양보를 위한 정지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도표 226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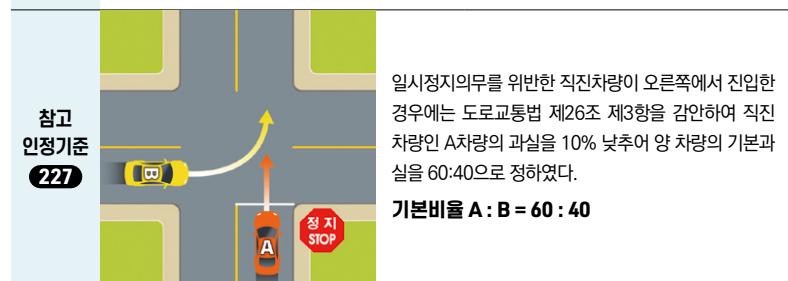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14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였으나,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일시정지 표시 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형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좌회전한 청구차량이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접촉하였고,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있음)
- 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측면 파손)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우측 도로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볼 수 있음
- 도로형태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 등 고려할 때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량으로 볼 수 있는 점

결정 이유

-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7은 도표 226과 달리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이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27의 사고 장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방향을 종합할 때 도표 227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나) 직진차량 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사고(B황색) (수정과실)				직진 직진	참고기준 228 (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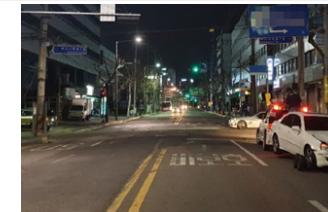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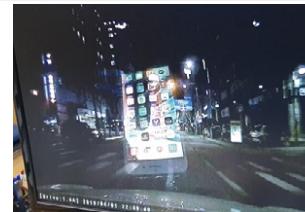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82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28(나)	<p>(나)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A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같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다만, 적용함에 있어 A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가산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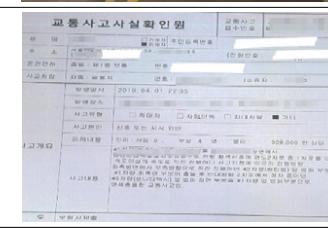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 왼쪽 이면도로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함 도표 228의 (나)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 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과속 및 신호위반 상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 구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이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왼쪽 도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를 직진(좌, 우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변경과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조기 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적색 신호에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조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조기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28의 (나)는 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진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 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 :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고, 본 사고에서는 교차로에 진입 후 청구차량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점과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조기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87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의 진행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8(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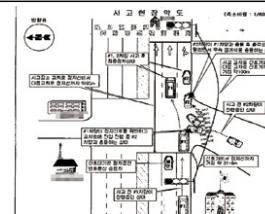
(다) B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과실 정도가 (나)에 비해 중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A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10:90으로 정하였다. 다만, 적용 함에 있어 A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기산한다.

기본비율 A : B = 10 : 9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 무를 위반한 점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p>• 청구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원쪽차량은 적색신호에 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정상 진행 중이었음</p> <p>•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심의 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악도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표시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 좌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결정 이유

- 한쪽방향에만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중 신호기가 없는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도표 228의 (다)는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정도가 황색신호 직진한 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중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호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포함)하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90% :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1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22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9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가)	<p>(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범퍼가 떨어진 것을 보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그러나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앞부분 파손)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1)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2)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과 양 차량의 파손부위, 양 차량의 정지사진을 보면,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 및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가)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도로에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이므로,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높아지고,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60% :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참고기준 229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2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나)	<p>(나) 우회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고, 우회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서행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내용은 청구차량 주장사항과 동일함 그러나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오른쪽차량인 피청구차량에게 양보 운전하지 않은 청구차량 과실 3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 사진(조수석 뒷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 사진(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판단됨
- 양 차량의 파손부위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약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파손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나)는 (가)의 과실비율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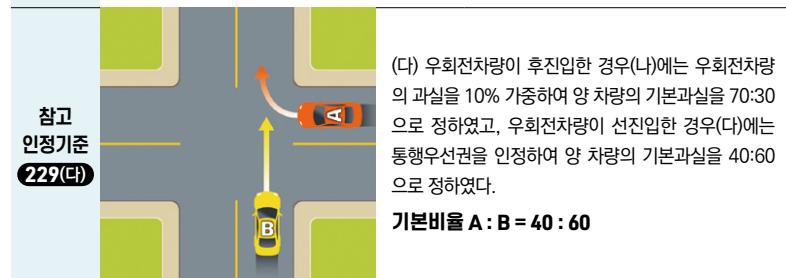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264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비정형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쪽 도로에서 진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본 건은 비정형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표 229의 (다)와 사고 장소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나머지 사고 상황은 도표 229의 (다)와 동일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소로에서 합류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한 청구 차량의 운전석 후면을 충격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정상 진입하고 있었으나 청구 차량이 갑자기 과속하여 진입함</p> <p>• 양 차량 진행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p> <p>• 청구인 청구차량의 우회전을 주장하지만, 청구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음</p> <p>•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과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위가 부딪침)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비정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진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우회전 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비정형 교차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판단됨
- 차량파손부위와 현장사진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현장 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다)는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선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40% : 후진입한 진진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교차로의 구조가 도표 229의 (다)와 일부 상이하나 나머지 사고 상황은 모두 동일하여, 도표 229의 (다)를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소로 우회전 대 대로 진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우회전	대로 진진	참고기준 230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008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0(가)**

(가)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진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다만, 우회전 A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하고, 우회전 A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70 : 3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서행,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사항과 동일함 • 사고 장소는 T자형의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및 후면이 파손되었고, 피청구 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소로)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중앙선 있는 대로)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볼 수 있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파손된 이유는 피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교차로 진진하였기 때문이므로,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가)는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진진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70% :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3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진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소로 우회전 대 대로 진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30 (나)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264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80 : 2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되는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0(나)	<p>(나)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진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다만, 우회전 A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하고, 우회전 A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진진 중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우회전하여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진진 중이었고,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대우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사진(전면부 파손)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측면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소로)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상황,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양 차량의 파손부위 및 최종 정차위치를 고려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대로에서 진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양 차량 파손부위 및 최종 정차위치를 고려하면 진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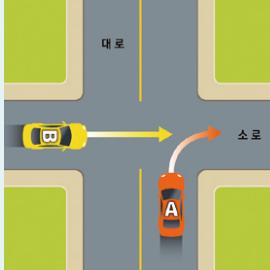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진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진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나)는 (가)의 기본과실에 소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10% 가중하여, 소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을 80% : 대로에서 선진입한 진진차량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대로 우회전 대 소로 직진 사고(A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31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663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1(다)	 <p>(다)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우회전 A차량이 대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직진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다)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10%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직진 B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나)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나 소로에서 선진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앞음을 A차량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정지를 주장하지만, 동영상에 청구 차량의 정지를 확인할 수 없음</p> <p>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p> <p>후진입차량인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p>#1 우회전</p> <p>직진</p>

-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했으나 피청구차량이 계속 우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정지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 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청구인은 청구차량의 정지를 주장하지만, 동영상에 청구 차량의 정지를 확인할 수 없음
-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 후진입차량인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대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 소로에서 직진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에 의하면 우회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이 사고 전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중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사고 전 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1의 (다)는 (가)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을 근거로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한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80%,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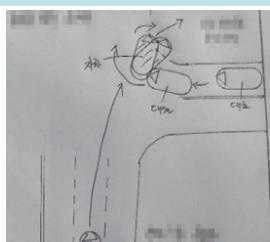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9-04249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여 오른쪽 상가로 진입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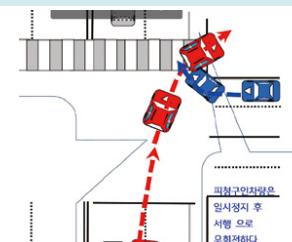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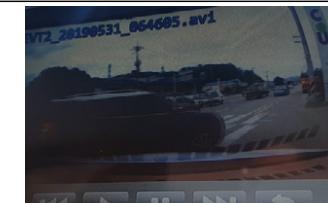
-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하여 삼거리 우측의 편의점으로 진입 중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돌한 후미추돌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피청구인



-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급진로변경하다가 정상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함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오른쪽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진로변경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여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한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3-1의(가)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한 사정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 중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294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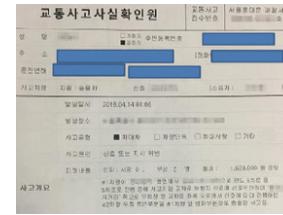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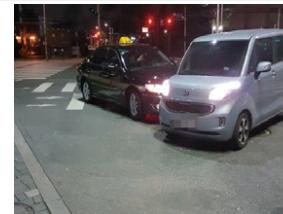
사고내용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며 오른쪽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3-1(가)	<p>(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우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녹색신호 직진 후 오른쪽 주유소 진입하려고 할 때,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p> <p>•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노외로 진입하던 중의 사고임</p> <p>•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노외로 진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로변경하며 진행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 진로변경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정수요소 : 피청구차량의 보행자 신호위반 우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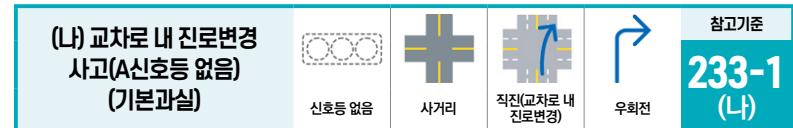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였던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3-1의 (가)는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위 도표 233-1의 (가)의 기본과실에 피청구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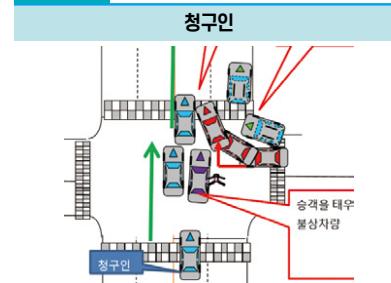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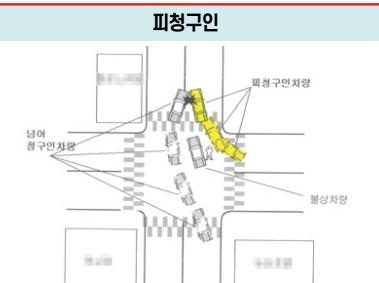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기타 유형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052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심의외 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후 오른쪽 도로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대로에서 직진 중 대우 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하였음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 20%, 대우회전차량인 피청 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p>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을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하였음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을 하였음 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추월을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청구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로변경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전면부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청구차량이 심의외 택시차량을 피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심의외 택시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33-1의 (나)는 직진차량이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직진한 점, 직진차량이 모든 차로에서 우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회전차량은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할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 우회전차량이 오른쪽차량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우회전차량보다 과실이 더 중하고 볼 수 있으므로, 직진 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472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 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4	<p>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고려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정지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p>	<p>•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 구차량이 오른쪽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 청구차량이 일 시정지 없이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차량의 추돌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차량으로 통행우선권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전면부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뒷부분 파손)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사거리, 황색 점멸 1)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사거리, 황색 점멸 2)

주요 생점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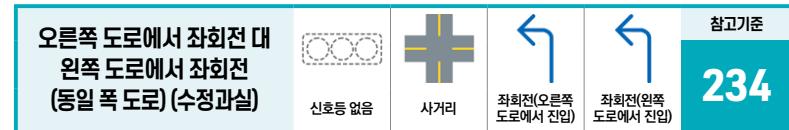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설치되었으나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이고, 양 도로 모두 황색점멸 신호만 있는(신호기 없는 도로 준용)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사고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이 없어, 파손부위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 차량의 진행속도 및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교차로 내에서 선진입이란 교차로에 진입시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영상이 없어 파손부위만으로는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동시 좌회전으로 판단)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왼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오른쪽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380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4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고려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40 : 6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 눈길의 흥색점멸신호가 있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면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진입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눈길에서 청구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눈이 쌓여 있어,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흥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동일 폭 사거리에서,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원료한 시점에, 후진입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축면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상당히 진행한 모습, 이 때 청구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태임)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

주요 쟁점

- 신호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흥색점멸 신호(신호기 없는 상태 준용)가 있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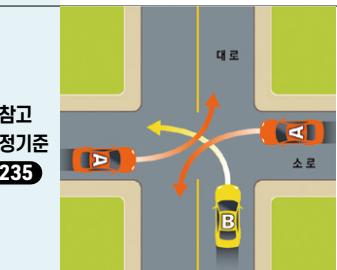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눈이 쌓여 있는 교차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접촉부위 등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왼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함
- 본 사례에서는 위 도표 234의 기본과실비율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00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원쪽의 소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5	 <p>양 차량 모두 좌회전하던 중의 사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B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정차 중이던 피청구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임 기좌회전한 청구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오른쪽에서, 피청구차량은 왼쪽에서 각각 좌회전을 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 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왼쪽 소로로 진입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뒷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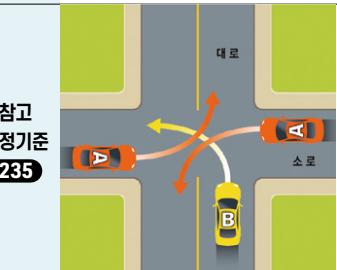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차로 구분이 없는 소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대로로 좌회전 진입하면서 왼쪽 앞부분으로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일부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감산 수정요소 없이, 도표 235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음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차량의 운행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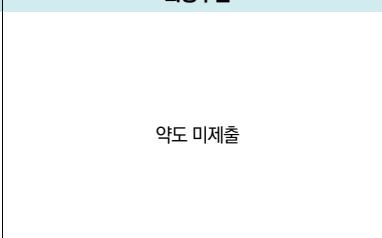
차대차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좌회전 사고(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소로 좌회전	대로 좌회전	참고기준 23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292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중 원쪽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진입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 차량이 빠른 속도로 소좌회전을 하였다. 		
참고 인정기준 235	 <p>양 차량 모두 좌회전하던 중의 사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에서 진입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B차량도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선진입, 대로 진행, 청구차량의 뒷부분이 충격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진입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하다가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서 좌회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대로에서 좌회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파손 부위 및 피청구차량의 진입 방향)
- 동영상(소로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유도선 안쪽으로 소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 진입한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속도와 소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의 대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소좌회전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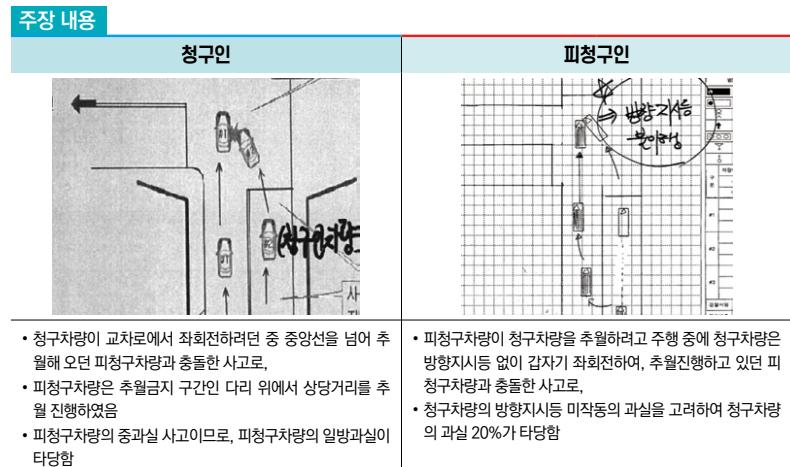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비정형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이 일부 선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소좌회전을 하였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비율을 가중하여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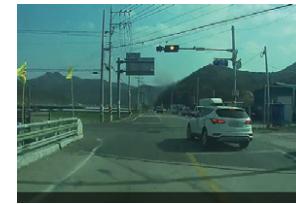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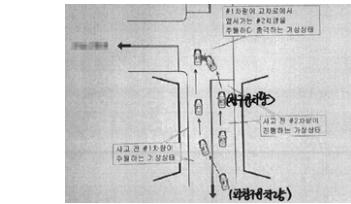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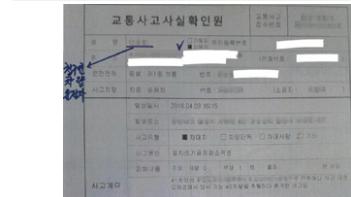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736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동일방향에 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본 사례는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점멸인 것과 교차로의 형태가 도표 237과 상이하나, 동일방향에서 진행 하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다가 선행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의 발생 형태는 도표 237과 동일하여 도표 237을 준용하여 결정한 사례임 			
참고 인정기준 237	 <p>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 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A차량이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한 반면, B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하여 불법적으로 추월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 려웠을 것이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앞지르기 금지장소위반이 기재됨
 - 사고현장 약도(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 중 발생한 사고기)
 - 동영상(청구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이나 교차로 진입 전 갑속하고 있는 상태임)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사고임)

주요 쟁점

- 좌회전 또는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동일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후행 직진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한 사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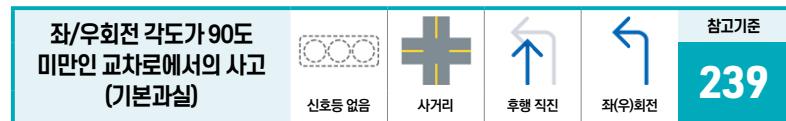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월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선행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청구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시간 동안 주월을 진행하였음

결정 이유

- 황색점멸등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나,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 사이에 심의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는데도 피청구차량은 심의의 차량을 추월하여 상당한 거리를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사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7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서는 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주월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판단하여 선행하여 좌회전 중인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0%,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도표 237과 달리 충돌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후행 추월차량이 피청구차량이 상당시간 동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237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71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교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 		
참고 인정기준 239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하지만, 좌(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장이 없는 경우보다 B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직진 중에 선행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재진입 중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진행하려는 차량으로 판단하였으나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p>	<p>• 1차선 도로의 우측 모퉁이가 예각으로 되어있는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좌측으로 넓게 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발생한 사고로,</p> <p>• 피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이고 후방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무과실 사고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
• 양 차량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도어,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전면)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우회전, 청구차량이 직진 중 사고가 발생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행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에서 미리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방향의 오른쪽에서 후행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대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충돌과정, 파손부위를 참작하여 결정함

- 도표 239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우)측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좌(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도표 238)보다 좌(우)회전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좌(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기타 사거리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444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 또는 그에 준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39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오른쪽 가장자리)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여야 하지만, 좌(우)회전차량인 B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장이 없는 경우보다 B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대우회전 하던 중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에게 중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은 정상 직진하였으나, 청구차량이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 과실 사고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우회전을 위해 오른쪽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도로에서 미리 오른쪽으로 붙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우회전 정도 및 양 차량의 손상부위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인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여 대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후방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양 차량의 손상부위와 정차 위치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선행상태에서 우회전을 상당부분 완료한 상태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우회전을 하던 중 동일방향에서 뒤따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 피청구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우회전을 상당부분 완료한 상태인 점, 충돌부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9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우)측으로 선행하면서 좌(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좌(우)회전 차량이 미리 중앙 또는 좌(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도표 238)보다 좌(우)회전차량의 과실을 20% 낮추어 좌(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음
- 본 사례에서는 양 차량의 충돌부위와 사고 후 정차한 양 차량의 위치를 검토하여, 선행 청구차량의 우회전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4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기본비율 A : B = 30 : 70</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T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청구차량의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도표 220 준용하여 삼거리일 경우 기본과실이 30:70이지만, 청구차량의 손상부위가 조수석 뒷부분임을 볼 때 청구차량이 선진인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할 수 없음 삼거리 사고 도표 220 준용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인정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손상, 피청구차량 조수석 전면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의 좌회전 진행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원쪽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할 때,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하나, 청구차량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0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40%, 좌회전차량의 기본과 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0과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삼거리 교차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종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6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 부근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동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기본비율 A : B = 20 : 80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T자형의 주택가 골목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전면부로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 축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명백한 선진입이 확인됨 따라서 도표 221에 청구차량의 선진입과 삼거리 수정요소(회전 차량에 10% 가산)를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장소는 Y자형 삼거리로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청구차량은 우회전 형태로 진입하여야 하는 곳이고, 피청구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넓은 상태임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서행으로 회전하였으나, 청구차량이 교차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대소로 구분이 불가함, 동일 폭의 도로임)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하는 모습)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뒷부분 손상, 피청구차량 조수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동일 폭의 도로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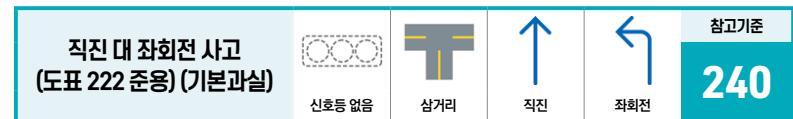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斷됨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를 고려할 때, 양 차량의 선진입과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 등에 의할 때,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과 양 차량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1은 도표 220의 원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 40%,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 60%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도표 240은 도표 221과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회전차량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있고, 본 사례는 위 도표 240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916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자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10 : 9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피청구인 차량 좌회전</p> <p>청구인 차량 직진</p>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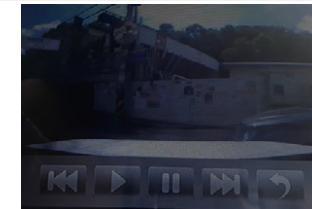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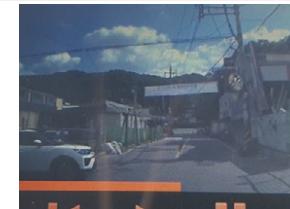
•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따라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사고 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은 기좌회전을 하였으나,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을 늦게 확인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양 차량이 접촉된 사고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피청구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모습, 대소로 구분이 가능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우측 대로에서 직진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대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확인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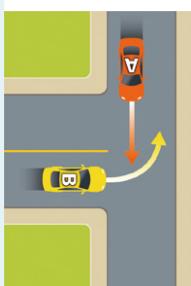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중앙선 있는 대로를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명확히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이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인 점,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2는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에서는 도표 222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인 점을 고려하여 회전차량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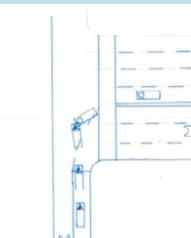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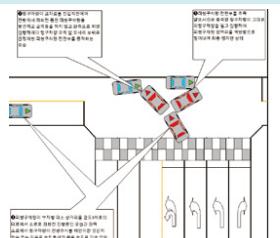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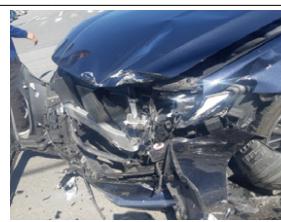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83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황색점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휀다와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이 손상되었으므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임 따라서 도표 223을 기초로 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좌회전차량에게 기본과실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청구차량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를 보면, 청구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피청구차량이 밀려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최종 정차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등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p>좌회전 중 금정차량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액방향으로 임전히 들어서 본 사고현장</p>
	 <p>청구차량 최종 정차상태 좌회전 중이던 피청구 차량 최종 정차상태 청구차량 진행방향에서 본 사고현장</p>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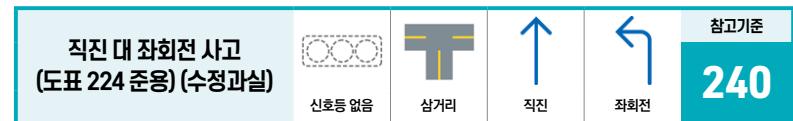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 및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생방 황색점멸 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인 점과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3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워, 양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0:5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23과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4630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 중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사고(도표 220~227)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35 : 65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차량이 대로(편도 2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은 소로(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이후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였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 차량의 일시정지 및 선진입, 그리고 기좌회전차량임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25%, 피청구차량의 과실 75%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원쪽 직진차량만 신경 쓰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좌회전하면서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대로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좌회전 대기 중인 청구차량의 모습)
- 동영상(다소 급하게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정차 위치)
- 양 차량의 손상 사진(피청구차량은 운전석 측면이, 청구차량은 전면부가 손상됨)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대기 후 다소 급하게 좌회전하였음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신호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직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소 급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대기 후 다소 급하게 좌회전하였음

결정 이유

-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신호기 없는 삼거리 준용)에서, 청구차량이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직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소 급하게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4는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한 차량보다 원쪽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소로 직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5% : 대로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55%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4 와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고, 사고 발생 전 다소 급하게 좌회전한 사실을 고려하여, 청구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360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일시정지표시가 한쪽에만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충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정상 직진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었음 여기에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충면 충격하였음을 감안 할 때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동일 폭의 교차로 진입시 양 차량 모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좌회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직진한 청구차량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정지' 표지가 있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 '정지' 표지가 없음)
- 동영상(청구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속도 및 전방주시의무 해태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원쪽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원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속 없이 계속 직진하였던 사정, 양 차량의 충격부위와 도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한 이후에도 감속 없이 계속 직진하였던 사정, 양 차량의 충격부위와 도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5는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는데, 도표 240은 도표 225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인 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좌회전차량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도표 240을 기초로 하면서,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고서도 서행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1190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인차량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기본비율 A : B = 30 : 70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 중 왼쪽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교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은 마주오는 스타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어 직진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직진에 주의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 청구차량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임)
- 피청구차량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에서 직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도로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었던 점과 청구차량이 우회전 차량인 점,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가)는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도로에 진로를 변경형태로 진입하는 것으로, 주의의무가 높아지는 점과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상황을 고려하여 우회전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 :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29와 동일한 사고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기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038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기본비율 A : B = 20 : 80</p>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한다.</p>
--------------------------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골목길 삼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 왼쪽 3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주도로에서 직진하였고, 측면이 충격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이 정상 주행 중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피양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 동영상(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전면부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에 나타난 충격과정,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0의 (가)는 소로에서 우회전한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직진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소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 :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고, 도표 240은 도표 230의 (가)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인 경우이므로, 회전차량인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를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 중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80% ● 피청구차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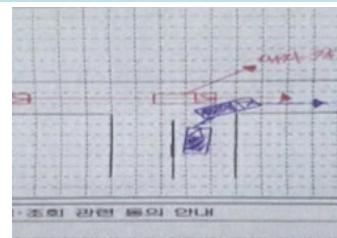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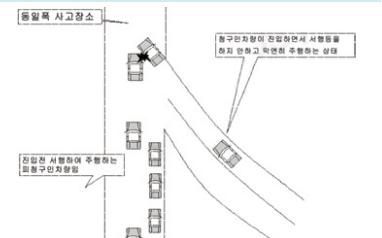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54573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0	 <p>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 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p> <p>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 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도표 229~233)에서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기산한다.</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소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운전석 앞도어부터 파손되었는데, 이러한 청구차량의 손상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될 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뒤늦게 우회전을 하여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 장소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청구차량의 우회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현장 사진(청구차량 진행 도로, 대로)
- 현장 사진(피청구차량 진행 도로, 소로)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대로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 중앙선이 없는 소로임)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 조수석 전면부가 손상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 중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 및 파손부위 등 고려할 때 양 차량 선진입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1의 (7)는 양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우회전한 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대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 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고, 도표 240은 도표 231과 동일한 사고 유형이지만,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회전차량이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소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도표 240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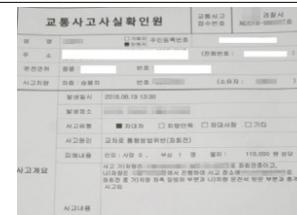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8-05599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1 기본비율 A : B = 40 : 6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회전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또한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측면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차량 상호 간의 사고(도표 234~236)를 그대로 적용한다.
--	--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대로에서 서행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 없이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기좌회전 왼로 중인 청구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청구차량이 급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서행 및 선진입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차량이 직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부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진행도로는 동일 폭의 도로인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4는 양 차량이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주의의무가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고려하여,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원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고, 도표 241은 도표 234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고,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나 양 차량 모두 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34와 동일하게 기본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음
- 본 사례에서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행하였던 상황이므로, 도표 2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941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중 피청구차량이 아파트 입구인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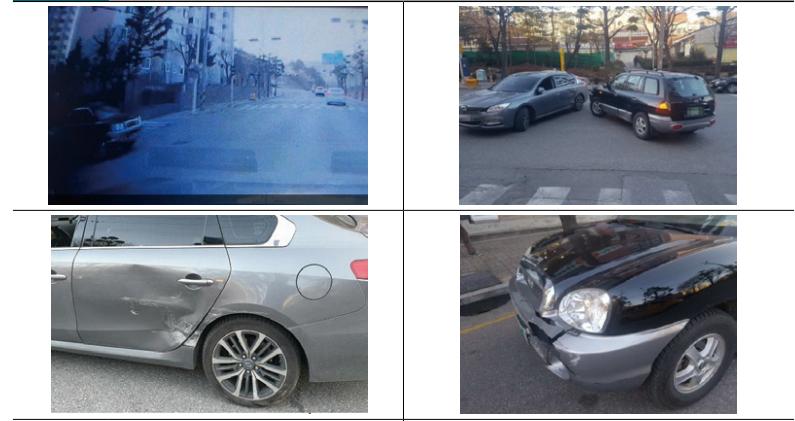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30 : 70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회전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로 인해 직진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다. 또한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측족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서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사거리 교차로 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는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차량 상호 간의 사고(도표 234~236)를 그대로 적용한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 중 아파트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선진입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 당했던 상황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 실 사고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임 도로여건상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순위는 맞으나, 청구차량 또한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및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및 신호위반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 선진입 인정하기 어려움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은 인정되기 어려움

결정 이유

-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아파트로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아파트 입구에서 대로로 좌회전을 하였던 점, 도로현황과 충돌부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35는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다른 차량의 운행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고, 도표 241은 도표 235와 동일한 사고 유형이고,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지만 양 차량 모두 회전차량이므로, 도표 235와 동일하게 기본과실비율을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의 아파트 진입로(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241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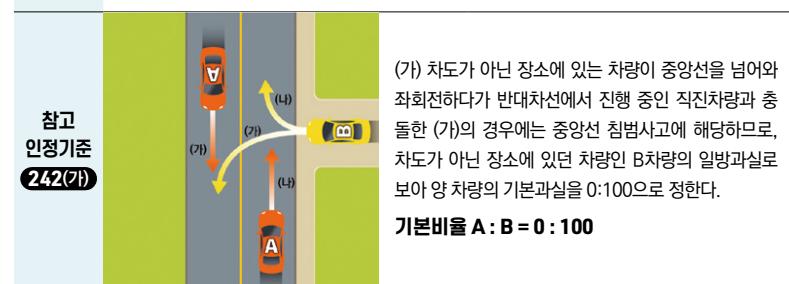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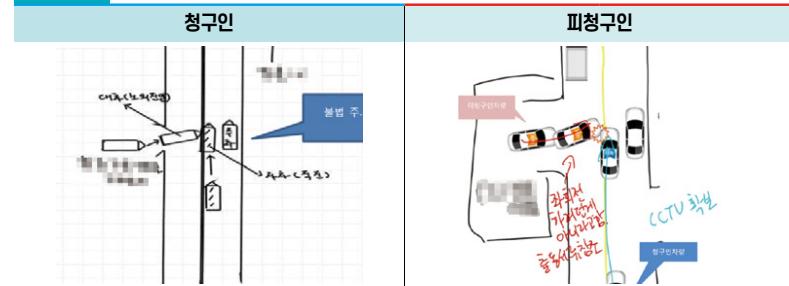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887 결정비율 A(청구):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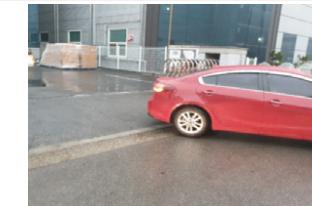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좌측 노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이 노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후진으로 주차장 진입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을 충돌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려던 중 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차량을 접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불가능한 사고임
-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면 손상)
- 사고현장 사진(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피청구차량의 정차 모습)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전면부 손상)

주요 쟁점

-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충돌한 사고인지 여부
- 피청구차량의 후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왼쪽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의 후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를 직진 중 좌측의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사고경위와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2의 (가)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보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도로로 진입하다가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2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피청구차량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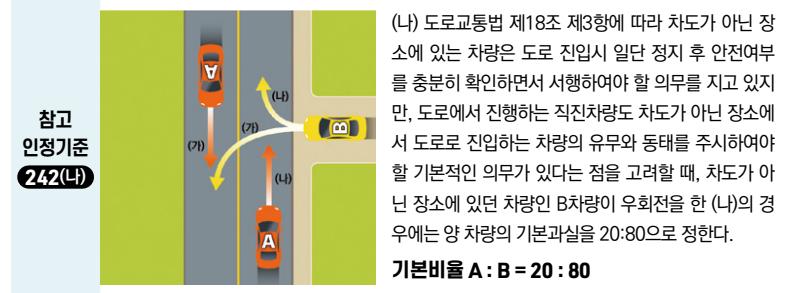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55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오른쪽 주차장에서 대로로 출차 후 대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대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 뒷부분이 손상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와 서서히 2차로로 진입 중 1차로의 청구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 선진입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뒤늦게 진입하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로 대우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 진입 중인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진로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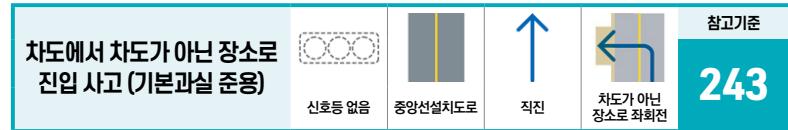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진로변경 중이 아니라 직진 중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대우회전하여 진입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2의 (나)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 후 도로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진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2차로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2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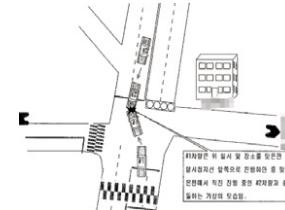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083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없는 장소로 진입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3		<p>신뢰의 원칙상 중앙선을 침범한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B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A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차선으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사고현장은 어근단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며, 도표 214에 따라 청구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피청구차량 앞으로 청구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노외로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을 예측하고, 피망하는 것 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날짜
성명	□ 여부	주민등록번호	2017/10/27
주소	집/단위/동/마을	【한글영문】	
운전면허	국/영국/보유	면적 :	
사고처	처소/승무현	장소/장면	【소재지】
발행일자	2017-10-22 22:00		
증명장소	□ 차량현장 □ 회사현장 □ 회사화물 □ 기타		
사고현장	□ 차량 □ 차량외기 □ 흡연자 □ 운전자		
사고원인	안전운전수칙무시		
인증내용	【인증내용】		
사고경과	사고 원인, 사고 유형, 사고 경위, 사고 결과	【사고경과】	
※ 13페이지에 있는 표 및 첨부증명서는 본인의 신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갖추고 운전증명서를 사용한 자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청구차량이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 동영상(사고 발생 모습)
 - 사고현장 약도와 교통사고실획인원에 청구차량이 '맞은편 일시정지선 앞쪽으로 진행'(역주행)하였다고 기재됨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이 불가한 곳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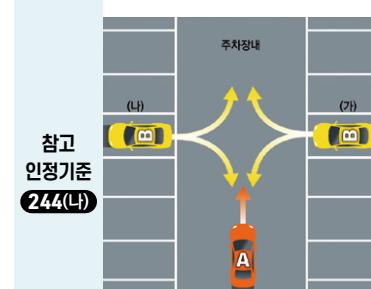
- 동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할 수 없는 노위 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3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지 않고, 맞은편 직진 차량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좌회전 방식으로 진입할 수 없는 장소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43을 준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0% ● 피청구차량 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688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통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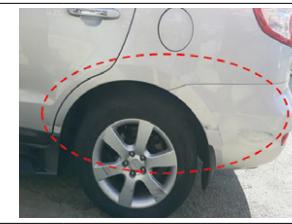
기본비율 A : B = 25 : 75

- (가)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 (나)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5:75로 정하였다.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주차장 내 통로를 직진 중 후진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후진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임은 다통이 없으나, 청구차량은 진입이 불가한 곳에서 역주행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후진 출차한 장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뒷부분 손상)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후진을 하는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주요 쟁점

- 지상주차장에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근접거리 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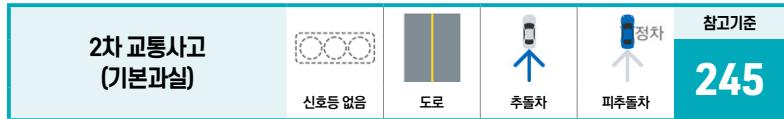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출차 중 통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결정 이유

- 지상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통로를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하여 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4의 (나)는 후진 출차하는 차량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5%, 후진하여 출차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5%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주차장 통로를 직진 중 왼쪽의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하는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후진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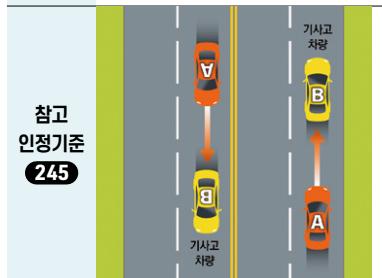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9725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80 : 20

사고내용

- 눈이 내린 낭판길에서 피싱구사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사고로 정시하고 있던 정구사 량을 충격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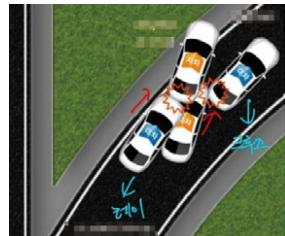


일반 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인 도표 505에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20%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기본비율 A : B = 8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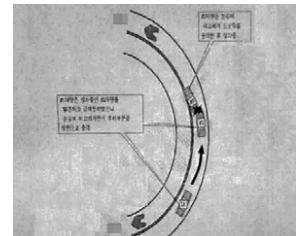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 청구차량이 선행하는 심의의 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차량 안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던 중 약 2~3분 경과 후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청구차량으로서는 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후미추돌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E당함

피청구인



- 청구차량이 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빙판길로 인하여 피청 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 2차 사고는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분이 지난 후에 발생되었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신고번호	경찰서
별명	민성호	주민등록번호	510-010-000000000000
소속	경찰서	신고일자	2018년 09월 10일
관련증명	증명: 차량 보유 번호: 1234567890	연도	16
사고현장	현장: 동네길	면적	0.00평
발행일자	2018.09.09 15:15		
제작장소			
사고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정사고 <input type="checkbox"/> 관리단속 <input type="checkbox"/> 대피상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부인	동네길에서 운전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내용	운전석 운전석 좌석에 차량으로 부딪쳤습니다.		
사고요약	운전석 운전석 좌석에 차량으로 부딪쳤습니다.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자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상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자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모습)
 - 사고현장 사진(선행사고로 정차한 청구차량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 사고 장소는 평도 1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시간은 시야의 제한이 없는 주간임

결정 이유

- 눈이 내린 빙판길에서 청구차량이 선행사고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은 2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장소와 사고 시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5는 일반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추돌사고(2차 사고)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2차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피추돌차량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정하고 있는 도표 505에 비하여 추돌차량의 과실을 20% 기산하여, 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편도 1차로의 빙판길에서 청구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 중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인 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5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13311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왼쪽의 본선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6	<p>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선행 화물차량을 보내고 서서히 합류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 차로로 합류를 시도하는 모습)
- 양 차량의 손상 사진(청구차량의 운전석 측면,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손상됨)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직진 중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진행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 중 피청구차량이 직진 중인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본선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차로로 합류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사고 발생 전 방향지시등 점등하였고, 합류순서에 따라 합류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차로 감소구간에서 본선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합류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진로변경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6은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차로감소 구간에서 청구차량이 본선 차로로 합류하던 중 본선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표 246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차로 감소 도로(합류)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4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845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본선차로로 합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6	<p>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선행차량을 따라 본 차로로 합류 중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의 좌측 후방에서 주행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합류를 인지하였으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제동도 없이 진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2차로를 진행 중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진행 중인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왼쪽 앞碜다 부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뒷부분이 손상된 사고임 청구차량의 진행차로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급진입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진행하던 합류구간의 모습, 노면에 양보 표지가 있음)
- 동영상(청구차량이 급하게 합류 중 직진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각하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동영상(청구차량이 합류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일반도로의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 본선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차로에 합류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양보표시가 있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의 급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합류구간에서 본선차로로 합류하다가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임
- 청구차량은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음에도 급하게 합류를 하였음

결정 이유

- 차로가 감소하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차로에서 합류 중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는 점, 청구차량의 진입속도와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6은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본선에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선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합류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차량이 합류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노면에 양보표시가 있고, 청구차량이 다소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6에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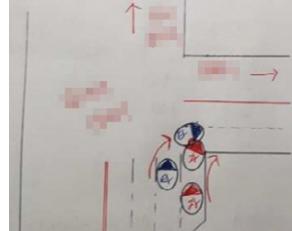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A우회전(오른쪽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오른쪽차)	우회전(왼쪽차)	참고기준 247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08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가)			
	<p>(가)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 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전이 가능한 3,4차로에서,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청구 차량이 정지해 있었으나, 피청구차량이 적재함으로 청구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계속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선행 피청구차량의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우회전 중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 청구차량의 추월 중 사고인 점, 피청구차량이 선행차량인 점을 근거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모습)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4차로에 근접하여 우회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3,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 양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청구차량 운전석 전면, 피청구 차량 조수석 뒷부분)

주요 쟁점

-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임(청구차량 : 4차로 [우회전 차로], 피청구차량 : 3차로[직진과 우회전차로])

결정 이유

-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다소 소좌회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 구차량이 오른쪽 차량인 점, 충돌 전 청구차량이 후행하다가 포켓차로 확장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진로변경하여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인지할 가능성이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과 동영상에 나타난 사고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경감하여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원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4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다소 소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가)에 따라 과 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가)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A우회전(오른쪽차))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오른쪽차)	우회전(왼쪽차)	참고기준 247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9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청구차량과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가)	 <p>(가) 동시 우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A 차량의 과실을 작게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차 중 원쪽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1차로에서 소우회전을 하면서, 실선을 침범한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2차로 내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 중 후행 우회전하던 청구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원쪽의 차량을 확인하고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추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이 확인됨)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이 확인됨)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2개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소우회전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임
- 양 차량의 최종 정차사진을 보면, 1차로의 피청구차량이 2차로 방향으로 소우회전하였음

결정 이유

- 동일방향에서 진행하던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후 정차한 사진에 의하면,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1항(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서행 우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경감하여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30%, 원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7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던 차량인 점과 피청구차량이 소우회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가)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나) 2개 차로 동시 좌회전 사고(A좌회전(왼쪽차))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좌회전(왼쪽차)	좌회전(오른쪽차)	참고기준 247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182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양 차량 모두 상대차량과 근접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나)	<p>(나)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 좌회전시 원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거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동시 우회전 중 사고(기)에 비해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처럼 소좌회전하면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진로변경 혹은 소좌회전 시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청구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피청구차량 후방을 추돌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또는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1,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대좌회전 또는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을 확인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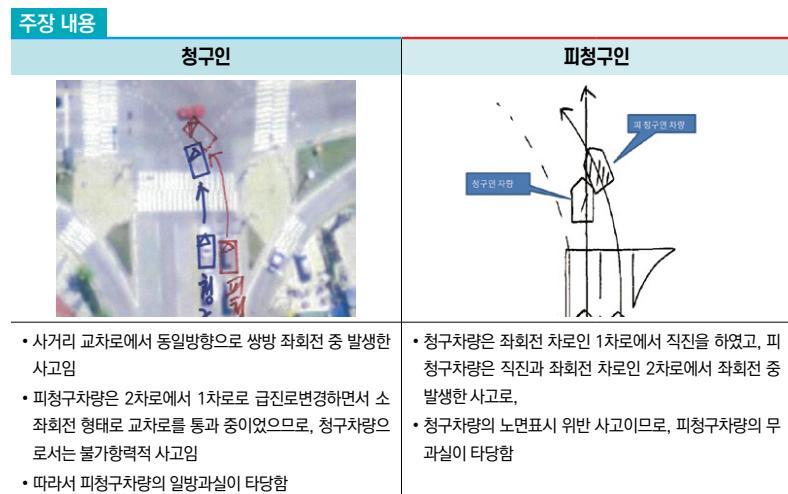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양 차량은 좌회전이 가능한 1,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서로 근접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차량이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나)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47의 (기)의 동시 우회전 중 사고에 비해 바깥쪽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경감하여,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왼쪽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나)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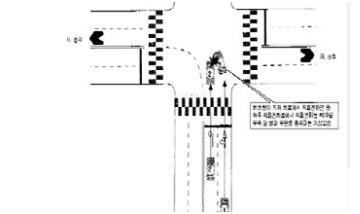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56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피청구차량은 직진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7(나)	 <p>(나)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게 양보) 등에 따라 원쪽의 안쪽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 좌회전시 원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거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동시 우회전 중 사고(가)에 비해 B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이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1차량으로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이 1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
 - 동영상(2차로의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교차로의 동일방향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소좌회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시실황이임 및 동영상에 의하면, 2차로의 피첨구차량이 소진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에서,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점, 2차로의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을 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7의 (나)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암쪽 서행 좌회전),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에게 양보)에 따라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자동차의 구조상 오른쪽차량보다 왼쪽차량에 대한 시야가 좁은 점을 감안하여, 도표 247의 (가)의 동시에 우회전 중 사고에 비해 바깥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경감하여,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40%,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60%로 정하였음
 - 본 사례는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2차로의 피청구차량이 소좌회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7의 (나)를 기초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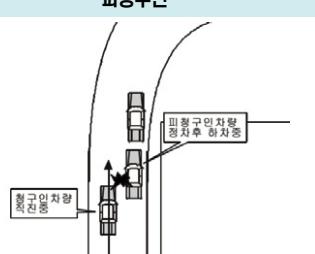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열린 문 접촉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48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993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우측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면서 왼쪽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8	 <p>문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약도 미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이면도로를 서행하며 주행 중 오른쪽에 주정차된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막연히 개문하였고, 청구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원쪽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사고이므로, 청구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은 직진 중이고, 피청구차량은 도로의 오른쪽에 주정차한 상태임)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여는 모습)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측면 손상)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개문으로 도어부분이 손상됨)

주요 쟁점

-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동일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직진 중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한 피청구차량이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청구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면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석 문을 연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사고 장소는 이면도로이므로, 청구차량도 주차된 차량의 개문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행해야 하는 점, 동영상에 확인되는 개문 시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8은 주정차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후행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개문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청구차량이 이면도로를 직진 중 오른쪽에서 정차 중인 피청구차량이 개문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48을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643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 피청구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후 도로 방향으로 문을 열면서 도로를 진행하던 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8	<p>문 열린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린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 인도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주행차로 쪽으로 급하게 개문하여 청구차량으로서는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며,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 운전석 문을 열면서 청구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이 사고는 전형적인 개문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주요 쟁점

-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어 동일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개문한 피청구차량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 중 우측 도로변에 정차한 피청구차량이 개문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됨
-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개문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피고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한 이후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피청구차량이 개문을 하였던 점과 피청구차량의 비상등을 보았을 때 청구차량이 이를 주의했어야 하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8은 주정차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후행차량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행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20%, 개문한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주행도로 방향으로 다소 급하게 개문한 점을 고려하여, 도표 248을 기초로 피청구차량의 과실비율을 가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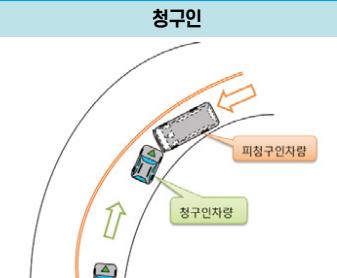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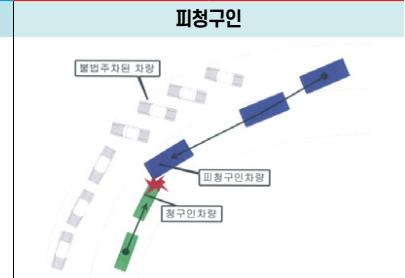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역주행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4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328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	 <p>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직진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A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상 주행 중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의 조수석 앞범퍼와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1차로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 마주오던 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차량도 전방주시 및 진로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30%,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범퍼 손상)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앞부분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1)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피청구차량의 중앙선 침범2)

주요 쟁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확인됨

결정 이유

-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오른쪽의 공간 및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는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 0%, 중앙선 침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반대방향의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도표 249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기타 도로유형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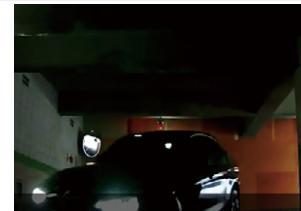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68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주차장의 진출입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청구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49	<p>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직진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을 충돌한 사고로서, A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주차장 출입구로 올라가던 중 피청구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차량으로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정차하였고,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청구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경광등으로 인해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청구차량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아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1.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고통사고 접수번호
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통사고 <input type="checkbox"/> 부상사고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로 123 (전화번호 : 010-1234-5678)
운전면허	증명서 1종 보통 번호 : 123456789012345678
사고차량	차종: 승용차 번호: 123456789012345678 (소유자: 김민수)
발생일자	2018.06.06 15:02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차장)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주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속 <input type="checkbox"/> 환경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내용	인상 / 차량 A 부상 1 명 / 물상 1,300,000 원 / 경상상
사고개요	#123456789012345678 차량 A 차량 B 차량 C 차량 D 차량 E 차량 F 차량 G 차량 H 차량 I 차량 J 차량 K 차량 L 차량 M 차량 N 차량 O 차량 P 차량 Q 차량 R 차량 S 차량 T 차량 U 차량 V 차량 W 차량 X 차량 Y 차량 Z 차량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중앙선침범이 기재됨

- 동영상(청구차량의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주요 생점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올라가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면 청구차량은 전조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으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청구차량의 주행을 인지하기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49는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측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 0%, 중앙선 침범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도표 249를 기초로 하고, 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으로 인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기중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